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31.

강훈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정무위원회 (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 11. 25.)

상정, 의결(수정가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훈식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취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폐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 병 권)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증여나 그 밖의 수취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금지하고¹⁾,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 금융위

1)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수취 등의 금지)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원회가 징계면직,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 횡령·배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에도 행정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행정제재 대상에 증여나 수뢰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포함하고, 그 적용대상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 전체 임직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상호금융업권 전체에 대해 금융사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대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³⁾ 및 「상호저축은행법」⁴⁾에서 각각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이미

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이하 생략)

[별표 1] 3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1]

2.라.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 신설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임.

□ 다만, 적용대상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⁵⁾뿐만 아니라 그 중앙회 임직원⁶⁾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임직원⁷⁾까지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⁸⁾

[표1] 현행법과 개정안의 적용대상 비교

적용대상		현행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	조합 임직원 (안 제30조의2)	○	○
	중앙회 임직원 (안 제72조제8항, 제73조제2항)	×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 임직원 (안 제95조제4항에 따라 제30조의2 적용)	×	○
	중앙회 임직원	×	×

-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권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된 행정제재를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임직원도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별표 1] 60. 제37조의5를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

5) 개정안 제30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

6) 개정안 제72조제8항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

7) 개정안 제30조의2를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직원에게 대해 적용

8) 개정안 제95조제4항은 ‘조합’ 임직원 관련 규정인 개정안 제30조의2만 농협·수협·산림조합에 적용하도록 하여,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적용규정은 없음.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행정처분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상호금융업권 전체의 형평을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둘째, 현행법 제30조의2는 수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99조제2항제3호9)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개정안과 같이 횡령·배임 행위가 같은 조문에 포함될 경우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 그런데, 「형법」 제356조¹⁰⁾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대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¹¹⁾는 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법정형과 「형법」 등의 법정형 간에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함.

- 또한, 동법 개정안에서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죄와 다르게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감한 것이 아니므로, 이 법에 업무상 횡령·배임에 대

9)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벌칙)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0조의2,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 벌칙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

- 따라서, 현행법상의 벌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횡령·배임 금지규정을 현행법 제30조의2와 구분하여 별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 대상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한편,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수뢰와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의 해당 조를 각 항으로 구분함(안 제30조의2 및 제95조제4항 등).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 대상에 농협·수협·산립조합 중앙회의 임직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한편,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수뢰와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의 해당 조를 각 항으로 구분함(안 제30조의2 및 제95조제4항 등).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95조제4항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9조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u>직접 또는 간접</u> 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 ----- <u>횡령, 배임, 직접·간접</u> ----- ----- ----- ----- -----.	<u>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u> <u>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u>제6조 제3항·제4항</u> , 제39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제6조 제3항·제4항</u> , <u>제30</u>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u>제30조</u>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u>제30조의2</u> , 제49 조제1항 또는 제5 9조제3항을 위반 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3. <u>제30조의2제1항</u> - -----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4. ~ 7.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제8항 중 “제31조제2항”을 “제30조의2,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제95조제4항 중 “제39조제1항제1호”를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9조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생략) <u><신 설></u>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생략)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⑨ (생략)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제30조의2, 제31조제2항----- -----. ⑨ (현행과 같음)
제73조(직원) (생략) <u><신 설></u>	제73조(직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

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벌칙) ① (생략)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30조의2,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 7. (생략) ③ (생략)	<u>호</u>----- ----- ----- ----- ----- ----- -----. 제9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2제1항----- ----- -----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